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3
----------	------

발의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발 의 자 : 김경자(양천), 김동윤

김인제, 김인호,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희걸

문종철, 박기열, 서영진

유동균, 이순자, 이윤희

장인홍, 황규복 의원(16명)

##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환과 양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 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교육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되고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와 그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여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가.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는 교환 및 양여만 가능하도록 함  
(안 제5조).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별도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6호 “가” 목 중 “일반재산” 을 삭제하고, 단서를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교환 및 양여” 로 한다.

제5조제26호의 “나” 목의 내용 중 “가목에도” 를 “가목과 나목에도” 로 하고, “나” 목을 “다” 목으로 변경한다.

제5조제26호의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소관 일반재산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처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 25. (생략)</p> <p>26.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소관 행정재산, <u>일반재산</u>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 <u>다만, 매입취득, 처분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만 해당된다.</u></p> <p>〈신설〉</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가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공유재산</u></p> <p>27. ~ 36. (생략)</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p> <p>1. ~ 25. (현행과 같음)</p> <p>26.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소관 행정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 <u>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교환 및 양여.</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소관 일반재산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처분.</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가목과 나목에도 -----</u> ----- ----- ----- -----</p> <p>27. ~ 36. (현행과 같음)</p>